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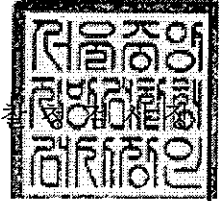
발행번호 2-210-2013-31248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전화번호 02)530-3114 )

분류기호 및  
문서번호

2013. 12. 16.



수신

발신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제목 불기소이유통지

귀하가 청구한 불기소이유를 아래와 같이 통지합니다.

① 사건번호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 2012 형제13651호
② 고소인성명		해당사항없음
피의자 (피고소인)	③ 성명	세라노
	④ 주민등록번호	871109-5*****
⑤ 죄명		가.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체포)
⑥ 처분검사		정효민
⑦ 처분년월일		2013. 12. 13.
⑧ 처분요지		가-공소권없음
⑨ 불기소이유		별지 참조
⑩ 비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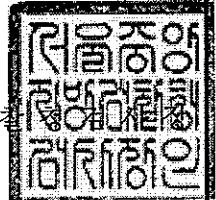
발행번호 2-210-2013-31248

# 서울중앙지방법검찰청

(전화번호 02)530-3114 )

분류기호 및  
문서번호

2013. 12. 16.



수신

서울중앙지방법검찰청

제목 불기소이유통지

귀하가 청구한 불기소이유를 아래와 같이 통지합니다.

① 사건번호		수원지방법검찰청 평택지청 2012 형제13651호
② 고소인성명		해당사항없음
피의자 (피고소인)	③ 성명	베츠티모시
	④ 주민등록번호	910918-5*****
⑤ 죄명		가.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체포)
⑥ 처분검사		정효민
⑦ 처분년월일		2013. 12. 13.
⑧ 처분요지		가-공소권없음
⑨ 불기소이유		별지 참조
⑩ 비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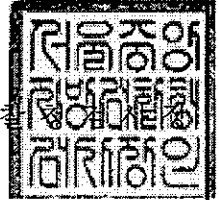
발행번호 2-210-2013-31248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전화번호 02)530-3114 )

분류기호 및  
분서번호

2013. 12. 16.



수 신

발신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제 목 불기소이유통지

귀하가 청구한 불기소이유를 아래와 같이 통지합니다.

① 사 건 번 호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 2012 형제13651호
② 고 소 인 성 명		해당사항없음
피의자 (피고소인)	③ 성 명	로드리게즈
	④주민등록번호	850430-5*****
⑤ 죄 명		가.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체포)
⑥ 처 분 검 사		정효민
⑦ 처 분 년 월 일		2013. 12. 13.
⑧ 처 분 요 지		가-공소권없음
⑨ 불 기 소 이 유		별지 참조
⑩ 비 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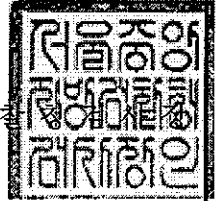
발행번호 2-210-2013-31248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전화번호 02)530-3114 )

분류기호 및  
분서번호

2013. 12. 16.



수 신

발신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제 목 불기소이유통지

귀하가 청구한 불기소이유를 아래와 같이 통지합니다.

① 사 건 번 호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 2012 형제13651호
② 고 소 인 성 명		해당사항없음
피의자 (피고소인)	③ 성 명	보한센
	④주민등록번호	811203-5*****
⑤ 죄 명		가.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체포)
⑥ 처 분 검 사		정효민
⑦ 처 분 년 월 일		2013. 12. 13.
⑧ 처 분 요 지		가-공소권없음
⑨ 불 기 소 이 유		별지 참조
⑩ 비 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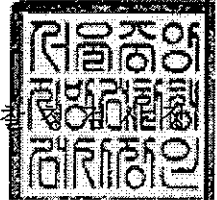
발행번호 2-210-2013-31248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전화번호 02)530-3114 )

분류기호 및  
문서번호

2013. 12. 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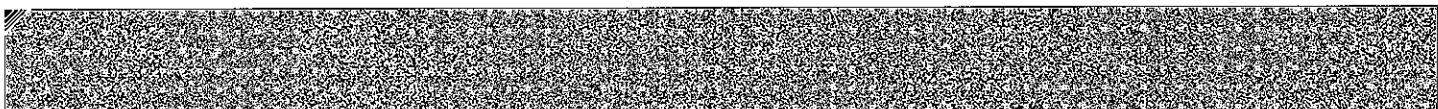
수 신

발신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제 목 불기소이유통지

귀하가 청구한 불기소이유를 아래와 같이 통지합니다.

① 사 건 번 호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 2012 형제13651호
② 고 소 인 성 명		해당사항없음
피의자 (피고소인)	③ 성 명	비커스로버트알렌
	④ 주민등록번호	811229-5*****
⑤ 죄 명		가.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체포)
⑥ 처 분 검 사		정효민
⑦ 처 분 년 월 일		2013. 12. 13.
⑧ 처 분 요 지		가-공소권없음
⑨ 불 기 소 이 유		별지 참조
⑩ 비 고		





문서확인번호 2138-7182-0287-85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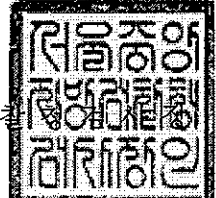
발행번호 2-210-2013-31248

# 서울중앙지방법검찰청

(전화번호 02)530-3114 )

분류기호 및  
분서번호

2013. 12. 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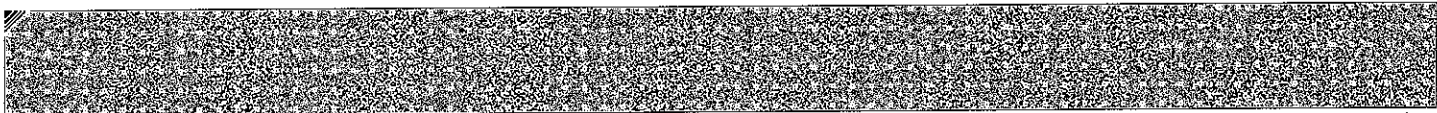
수 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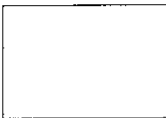
발신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제 목 불기소이유통지

귀하가 청구한 불기소이유를 아래와 같이 통지합니다.

① 사 건 번 호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 2012 형제13651호
② 고 소 인 성 명		해당사항없음
피의자 (피고소인)	③ 성 명	벤자민피곤잘레스
	④주민등록번호	870430-5*****
⑤ 죄 명		가.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체포)
⑥ 처 분 검 사		정호민
⑦ 처 분 년 월 일		2013. 12. 13.
⑧ 처 분 요 지		가-공소권없음
⑨ 불 기 소 이 유		별지 참조
⑩ 비 고		





문서확인번호 2138-7182-0287-85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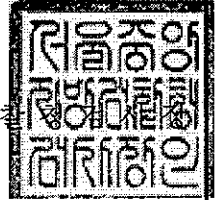
발행번호 2-210-2013-31248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전화번호 02)530-3114 )

분류기호 및  
분서번호

2013. 12. 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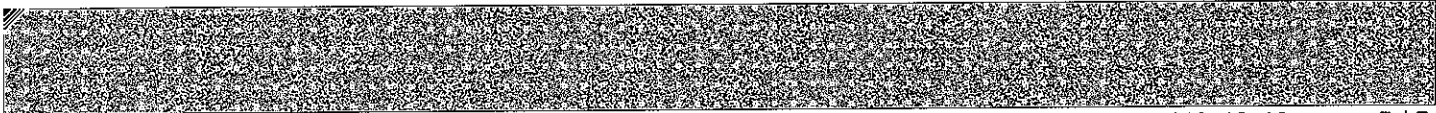
수 신

발신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제 목 불기소이유통지

귀하가 청구한 불기소이유를 아래와 같이 통지합니다.

① 사 건 번 호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 2012 형제13651호
② 고 소 인 성 명		해당사항없음
피의자 (피고소인)	③ 성 명	베스게즈다니엘
	④ 주민등록번호	870324-5*****
⑤ 죄 명		가.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체포)
⑥ 처 분 검 사		정효민
⑦ 처 분 년 월 일		2013. 12. 13.
⑧ 처 분 요 지		가-공소권없음
⑨ 불 기 소 이 유		별지 참조
⑩ 비 고		





##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

2013. 12. 13.

사건번호 2012년 형제13651호

제 목 불기소결정서

검사 정효민은 아래와 같이 불기소 결정을 한다.

### I. 피의자

1. 로드리게즈(Rodriguez, Michael Anthony)
2. 베스게츠다니엘(Vazquez, Daniel Miguel)
3. 베츠티모시(Betz, Timothy Patrick)
4. 보한센(Beau, Hansen)
5. 비커스로버트알렌(Vickers, II Robert Allen)
6. 벤자민피곤잘레스(Benjamin, P Gonzales)
7. 세라노(Serrano, Joseph Christopher)

### II. 죄 명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체포)

### III. 주 문

피의자들에 대한 공소권 없다.

### IV. 피의사실과 불기소이유

1. 피의자 바스케즈, 로드리게스, 베츠는 공동하여

2012. 7. 5. 을 체포하여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체포)

2. 피의자 빅커스, 곤잘레스, 베츠는 공동하여

2012. 7. 5. 을 체포하여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체포)

3. 피의자 바스케즈, 세라노, 보한센은 공동하여

2012. 7. 5. 을 체포하여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체포)

○ 이 사건은 한미주둔군지위협정사건으로, 2013. 12. 13. 법무부장관이 재판권불



행사를 결정하였다(기록 제5권 제1781쪽 미군인범죄사건처리의견승인).

○ 공소권 없다.

### 3. 범죄사실

#### 1. 피의자 바스케즈, 피의자 로드리게스, 피의자 베츠의 공동범행

#####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체포)

피의자 바스케즈, 피의자 로드리게스, 피의자 베츠는 오산공군기지 외부에 밀접해 있는 신장쇼핑몰에서 소파에 의거 미군 장병들의 질서 및 규율을 유지하고 장병들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목적으로 영외순찰근무를 하고 있었다. 그러나 소파규정에는 이들에게 차량을 이동주차시킬 권한이 없고 차량을 이동 주차해야 할 경우 한국 경찰에 요청해 조치를 취할 수 있을 뿐이다.

피의자 로드리게스, 피의자 베츠는 2012. 7. 5. 19:57경 평택시 신장동 313-14에 있는 “ .뮤직” 앞 노상에 피해자 ( 세, 남) 소유 다마스 차량과 모닝 차량이 주차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의자 로드리게스, 피의자 베츠는 “ .뮤직” 내로 들어가 피해자 , 그의 동생 피해자 ( 세, 남)에게 차량이동시킬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들이 즉시 차량을 이동조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었고, 이 무렵 지원 요청받은 피의자 바스케즈가 도착하였다.

피의자들은 같은 날 20:33경 “ .뮤직” 앞 노상에서 차량을 이동조치하고 돌아온 피해자 에게 “한국경찰을 불렀으니 기다려라.”며 피스 뮤직 내?외부에서 말다툼을 벌였고, 문을 닫으려고 출입구를 나오는 피해자 의 양팔을 붙잡아 전기박스에 밀어 붙인후, 피해자 을 바닥에 눕히고, 양팔을 뒤로 꺾어 수갑을 채워 그 때부터 20:57경까지 약 24분 동안 그를 체포하였다.

#### 2. 피의자 빅커스, 피의자 곤잘레스, 피의자 베츠의 공동범행

#####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체포)

피의자들은 2012. 7. 5. 20:40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 세, 남)이 “한국 사람을 체포할 권리도 없으면서 왜 그러느냐? 수갑을 풀어줘라.”라고 항의할 때, 피의자들에게 어떠한 폭력이나 위해를 가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해자를 바닥에 눕히고, 양팔을 뒤로 꺾어 수갑을 채워 그 때부터 21:00경까지 약 20분 동안 그를 체포하였다.

### 3. 피의자 바스케즈, 피의자 세라노, 피의자 보한센의 공동범행

####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체포)

피의자들은 2012. 7. 5. 20:52경 평택시 신장동에 있는 “신장쇼핑몰” 입구에서 피해자 이 친형 의 수갑을 풀어주라며 오른손을 들어 항의하는 것을 미헌병들에 대한 공격행위로 간주하여 피해자를 바닥에 눕히고, 양팔을 뒤로 꺾어 수갑을 채워 그 때부터 20:57경까지 약 5분 동안 그를 체포하였다.

## 6. 수사결과 및 의견

### < 피의자들 진술 분석 >

#### o 피의자 로드리게스의 진술

베츠 티모시와 함께 영외순찰 중 뮤직 내부에 있던 피해자 ,  
에게 차량 이동 주차를 요청하였는데 즉시 차량을 이동하지 않아 헌병대 상황실에 연락하여 한국경찰의 출동을 요청하였으며,

▶ 당시 헌병대 상황실 근무자인 커시오 브랜든 토마스를 상대로 로드리게스로부터 한국 경찰의 출동을 요청 받은 사실이 있는지 조사하였으나, “정식으로 한국 경찰의 출동 요청을 받은 사실이 없다.”라고 진술함.(기록 제1137쪽 진술조서 참조)

바스케즈 하사가 합류하였고, 차량을 이동 주차하고 피스뮤직으로 돌아오던 이 핸드폰을 이용, 사진 촬영 시도하여 바스케즈 하사가 이를 제지하였더니 은 뮤직 내부로 들어가 버렸고, 바스케즈 하사가 가게 내부로 따라 들어가자 갑자기 이 바스케즈 하사의 팔을 잡고 밀치며 팔꿈치로 가슴을 가격한 뒤, 갑자기 양손으로 베스케츠 하사의 목살을 잡았으며,

▶ 피해자 이 운영하는 뮤직 내부 CCTV 동영상, 주변 방범용 CCTV 판독결과 위 로드리게스 진술과 같이 피해자 이 팔꿈치로 바스케즈의 가슴을 가격하거나, 양손으로 목살을 잡는 행위 등은 전혀 확인되지 않음.

(기록 제291쪽 방범용 CCTV 채증 사진, 제316쪽 피스 뮤직 내부 CCTV 채증 사진 참조)

이후, 바스케즈 하사가 [ ]의 좌측팔을 잡고, 내(로드리게스)가 우측팔을 잡은 상태에서 상점 문 앞 전기 제어 박스 쪽으로 밀쳤는데, 갑자기 [ ]이 나타나 주먹으로 내(로드리게스) 얼굴을 가격하였다.

▶ 방법용 CCTV 확인 결과, 로드리게스와 바스케즈가 각각 양쪽에서 [ ]의 팔을 붙잡은 상태에서 전기 제어 박스 쪽으로 밀고 나와 밀치는 모습이 확인되고, [ ]이 갑자기 나타나 바스케즈의 몸을 붙잡고 이를 제지하는 장면만 확인될 뿐, 주먹으로 로드리게스의 얼굴을 가격하는 모습은 없었음.(기록 제 306쪽 사진 제32호 참조)

계속해서 [ ]과 실랑이를 하자 군중들이 모여들었으며, 이 때, 행인 신진현도 합세하게 되었고, [ ]이 계속 저항을 하여 바스케즈 하사가 [ ]에게 수갑을 채우라고 하여 수갑을 꺼내 [ ]의 손목에 채우게 되었다. 그 순간 옆 구역을 순찰하던 곤잘레스 상병, 빅커스 하사가 도착하여 [ ]을 제지하였다.

▶ 방법용 CCTV 분석 결과, 피해자 신진현이 [ ]을 수갑 채우던 로드리게스, 베츠, 바스케즈에게 “너희는 한국인을 체포할 권리가 없다.”고 말하며 항의하는 모습이 촬영되었고, 지원 나온 곤잘레스, 빅커스가 사건 경위 등에 대하여 사전 파악하지 않은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 ]의 가슴을 양손으로 밀치고 바닥에 넘어뜨려 수갑을 채움.

#### ○ 베츠 티모시의 진술

로드리게스와 함께 영외 순찰중 [ ]뮤직 앞에 주차된 파랑색 차량 2대를 발견하여 가게 내부로 들어가 치킨을 먹고 있던 2명의 한국인에게 차량을 옮겨달라고 하자 차량은 옮기지 않고 “저리 가라”는 표현의 손짓을 하여 통역관(추왕길)을 통하여 한국 경찰을 불러 달라고 요청하였고, [ ]은 “Fuck You”를 의미하는 가운데 손가락을 치켜 올린 뒤 [ ]과 차량을 이동 주차하였고,

▶ 통역관 추왕길을 상대 로드리게스, 베츠 티모시로부터 한국 경찰을 불러 달라고 요청받은 사실이 있는지 조사하였으나, “영외 순찰현병들로부터 그런 말을 들은 적이 없다. 내가 송탄파출소에 전화 통화를 시도한 적은 있으나 통화중

으로 연결되지 않았고, 이에 정식으로 한국 경찰의 출동을 요청한 사실은 없었다.”라고 진술함.

(기록 제246쪽 수사보고서, 제248쪽 진술조서 참조)

이후 약 30미터 떨어진 곳에 블러드를 설치한 후, 재차 피스뮤직으로 이동하던 중 로드리게스와 바스케즈가           의 팔을 뒤로 꺾어 수갑을 채우려 하였고,           이 주먹으로 로드리게스의 좌측 얼굴을 1회 가격하는 것을 목격하던 뒤, 현장으로 달려가           을 밀쳐내고           의 수갑 채우는 것을 도와주었다는 진술이며,

▶ 방법용 CCTV 분석 결과,           이 로드리게스의 안면부를 주먹으로 가격하는 장면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베츠 티모시가 현장으로 달려와           이 아닌 신진현을 밀친 것으로 확인됨.

#### o 바스케즈의 진술

지원요청을 받고           뮤직 앞에 도착하였는데 차량을 이동 주차하고 돌아온           이 로드리게스에게 샷대질을 하며 행패를 부리고, 베츠 티모시가 수첩에 메모하는 것을 휴대폰으로 촬영하려고 하여여 찍지말라고 제지하자,           이 로드리게스를 밀치며 “가라”고 소리치고,

▶ 방법용 CCTV를 확인한 바,           이 차량을 이동조치하고 돌아온 사이 바스케즈는 이미 현장에 합류해 있는 상태였으며,           이 오른손을 들어 샷대질을 하는 것은 확인되나, 로드리게스를 손으로 밀치는 장면은 전혀 확인되지 않음.

(기록 제298쪽, 제299쪽 방법용 CCTV 채증 사진 참조)

한국 경찰이 올때까지 기다리겠다고 하였으나,           이 나와 로드리게스가 가게 내부에 있는데도 문을 잠그려해 가게 밖으로 나왔으며,           이 가게 문을 잠근 후, 양손으로 내 떡살을 잡아서 로드리게즈와 함께           의 양팔을 잡고 전기박스 쪽으로 밀쳐 제지하자 갑자기           이 나타나 주먹으로 로드리게스 얼굴을 1회 폭행하였다. 내가           을 바닥에 눕혀 제지하고 로드리게즈와 베

츠 티모시가 을 바닥에 놓힌 뒤, 수갑을 채웠는데 시민들이 몰려와서 을 데리고 현장에서 약 15미터 떨어진 베스킨라빈스로 이동하였고,

▶ 방범용 CCTV를 확인하였더니 이 바스케즈의 멱살을 잡는 장면은 없으며 또한 이 로드리게스의 안면부를 주먹으로 가격하는 장면은 전혀 확인되지 않음.

베스킨라빈스 앞 노상에서 한국 경찰과 마주쳐 을 한국경찰에게 인계하려고 했으나(한국경찰에게 수갑을 풀어달라는 요구를 받지 못했다고 함) 과 시민 때문에 수갑을 풀어주지 못하고 부대 앞쪽에 이르러 의 수갑을 풀어주려 하였으나 !이 시비를 걸어 도 바닥에 눕히고 수갑을 채웠고, 몇 초 지나서 비커스가 군중들이 몰려드니 수갑을 풀어주자고 하여 바로 수갑을 풀고 경찰에 인계하였다는 진술이며,

▶ 베스킨라빈스 앞 노상에서 로드리게스, 바스케즈와 처음 마주친 한국 경찰은 순경 이철구로 당시 상황에 대하여 조사하였더니 “제가 영어를 못하여 당시 검정색 옷을 입고 있던 여자분에게 분명히 수갑을 풀어달라고 통역을 부탁했습니다. 그리고 그 검정색 옷을 입은 여자분이 분명히 통역을 했습니다.”라고 진술하고,(기록 제671쪽 진술조서 참조)

검정색 옷을 입고 통역을 하였던 목격자 박지나소미 또한 “한국 경찰(순경 이철구)과 마주쳐 그 경찰관에게 ‘이 사람( ) 수갑을 풀어줘야하는 것 아니냐?’라고 말을 하자, 경찰관이 미현병에게 ‘풀어줘라.’라고 말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현병이 한국말을 알아듣지 못하여 내가 ‘이 경찰이 수갑을 풀어주라고 한다.’고 통역을 하였더니 ‘풀어줄수 없다. 통역관이 올때까지 못풀어준다. 당신과 같은 통역관은 필요치 않다. 부대 통역관이 올 때까지 기다리겠다.’라고 말을 하였다는 진술임.(기록 )

#### ○ 곤잘레스, 빅커스, 보한센, 세라노의 진술

위 피의자들에 대하여 출석요구하여 지원 경위, 및 에 대한 수갑 사용 경위, 수갑 해체 경위에 대해 조사하였으나 모두 진술거부하여 실제적 진실 알 수 없었음.

< 범리검토 결과 >

○ 주한미군 법집행절차 규정 190-50, 1-11, B (교통집행 책임은 한국측 당국에만 있다. 이는 순찰, 차량정차, 구두경고 또는 한국 교통법을 낭독하는 것을 포함 한다)

▶ 따라서, 주차관련 단속 및 이동조치는 영외 순찰 헌병의 권한에 해당되지 않으며, 주차이동조치가 필요하면 한국경찰에 연락해 한국경찰이 조치해야 한다.

○ 주한미군 법집행절차 규정 190-50, 1-11, C (영외순찰활동 중에 주한미군 요원은 군인복무규율의 효력 하에 있고, 해당 규율을 위반하거나 위반혐의가 있는 자를 억류할 수 있다)

▶ 따라서, 차량을 이동 조치했고, 별다른 위험이 없는 상황에서의 체포 행위는 개인적인 폭행 및 불법체포, 감금에 해당한다.

○ 주한미군 법집행절차 규정 190-50, 제2장 무력사용 2-1 평시 e (3), (4)

▶ 제3항

Personnel who are not subject to the UCMJ(e.g., Department of State employees, family members, DoD civilian employees, local nations, and third country nationals) will not be placed in handcuffs or plastic restrains unless doing so is necessary in order to detain them for the purposes of preventing injury to themselves, LE personnel or others or when protecting DoD resources vital to nation security as defined in Paragraph 2-2b.

(수갑사용의 요건 관련 헌병 또는 타인의 부상을 방지하거나 국방부 자원 보호 외 수갑 등 장구 사용은 제한)

▶ 제4항

Except in the vicinity of vital U.S. property or in accordance with agreements between U.S. and ROK authorities, USFK LE personnel have no

jurisdiction over persons not subject to the UCMJ off-post and, accordingly, cannot exercise the same level of authority as is exercised over U.S. military personnel. Therefore, except when protecting DoD resources vital to national security (as defined in paragraph 2-2b) in times of increased security, handcuffs or plastic restrains will not be used off-post on nonmilitary persons.

(헌병의 사법권 범위 및 수갑사용의 객체관련 기지 영외 민간인에 대한 사법 권한이 없으며 국방부 자산 보호 목적 외 민간인에 대한 수갑 등 장구 사용은 불가)

▶ 미군 측은 미헌병 및 피해자, 다른 사람들의 안전을 위해 수갑을 채운 것이라고 주장하며 위 조항을 미헌병에게 유리하도록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있지만 사건 당시 상황이 부상이 발생하거나 부상에 이를 만큼의 폭력행사는 없었다는 것은 목격자들 진술, 다수의 CCTV 동영상, 피해자 진술에 확인된다. 따라서, 부상을 방지할 목적으로 수갑을 사용한 것이 아닌 미헌병들의 사적 감정에 의해 이뤄진 행위로 판단된다.

○ 한미행정협정 합의의사록 제22조 제10항 (미국 시설과 공간 밖에서 군 당국은 “오직 한국경찰과 합의 하에 미군의 규율과 명령을 유지하고 그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존재할 수 있다) 합중국 군 당국은 시설이나 구역의 주변에서 동 시설이나 구역의 안전에 대한 범죄의 기수 또는 미수의 현행범을 체포 또는 유치할 수 있다. 합중국 군대의 구성원, 군속 또는 가족이 아닌 자는 즉시 대한민국 당국에 인도되어야 한다.

▶ 따라서, 한국 경찰이 도착했는데도 신병을 즉시 인계하지 않은 것도 위반이다.

○ 제51헌병대 자체 운영규범 31-101(SFS)

헌병은 주한미군에게 공격이 가해졌을 경우 한국민을 구금할수도 있다. 헌병은 오직 심각한 부상이나 신체적 손상이 가해졌을 경우 한국인을 속박(수갑)할 수 있다.



▶ USAG 험프리스기지 헌병대 자문 결과, 위 주한 미공군 제51헌병대 자체 운영 규범 31-101에서 규정하고 있는 “심각한 부상이나 신체적 손상”의 정도는 의료기관의 응급 처치가 필요한 수준의 부상과 위해를 말하는 것으로 본 건의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는다는 진술 청취하였다. 피해자들이 본 건 피의자들에게 응급실에 후송될 정도의 상해를 입히거나, 폭력을 행사한 사실이 없음에도 수갑을 채운 행위는 명백히 체포 행위에 해당한다.

< 경찰의견 >

○ 신장쇼핑몰에서 미헌병들의 주차이동 요구 행위가 관행이 되었다는 미측 자체조사결과를 차제에 검토하더라도 피스뮤직 매장 내?외부에서 피해자를 나가지 못하게 한 미헌병들의 행위는 공무를 이탈한 행위로 판단되며,

○ 미측 자체조사결과는 미헌병 자신들과 피해자, 또 다른 민간인들이 부상을 입지 않도록 수갑 사용이 필요했다고 주장하지만(미측이 작성한 수사보고서 중, 수갑사용 부분)

While the jurisdiction of Town Patrol officers is limited to members of the U.S. Armed Forces, civilian component, or their dependents, U.S. Forces Korea Regulation 190-50 states that the Town Patrol may handcuff Korean nationals when necessary to prevent injury to themselves, Law Enforcement personnel or others, or when protecting DoD resources vital to national security. The 51 SFS OI further states that Town Patrol members will only restrain(handcuff) Korean nationals when required to protect him or herself from possible serious injury or bodily harm.

순찰단원들의 관할권은 미군, 군속, 또는 그 가족들에게 제한되어 있으나, 주한미군 규정 제 190-50호에서 명시된 바, 순찰단원 본인들, 법집행 인원 또는 다른 이들의 부상을 막기 위해 필요할 때, 또는 국가 안보에 중대한 미국방부 자원을 보호할 때, 순찰단은 한국인들에게 수갑을 채울수 있다. 또한 제51 SFS 운영지침은 순찰단원들이 있을 수 있는 심각한 부상 또는 신체적 상해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할 때에만 한국인들을 속박(수갑을 채움)할 것이라고

명시하고 있다.

피해자들이 폭력을 행사하지 않았다는 점이 다수의 CCTV에 명백히 촬영되어 있고, 현장에 있던 목격자들도 똑같이 진술하고 있다. 미헌병들에게 심각한 부상이나 신체적 위해를 가한 폭력행사가 없는 상태에서 피해자 3명에게 수갑을 사용한 행위는 정당방위로 볼 수 없고, 부상을 방지할 목적으로 수갑을 사용한 것이 아닌 아미헌병들의 사적 감정이 앞선 체포행위로 판단되며,

○ 미측은 미헌병과 한국경찰 간의 언어장벽으로 인해 수갑 제거와 신병인계가 지연되었다고 하지만 피해자들을 흥분한 군중으로부터 더 안전한 곳으로 이동시킨 후 한국경찰에 인계하려고 했다는 미헌병의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한국경찰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 즉시 인계하지 않은 것은 오히려 상황을 더욱 악화시켰고, 한국경찰이 도착한 이후에도 재차 양상원을 체포한 행위는 적법 절차를 따른 것이 아닌 사적 감정에 의한 체포행위로 판단된다.

○ 본 건 피의자들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체포)으로 기소 의견임..